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6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정동만·김선교·윤영석

박성민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이달희 • 박충권 • 서지영

정연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·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 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, 제143조제2호라목, 제144조제2호라목, 제1 46조제2항제4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068호)과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06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방사성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방사성폐기물"이라 한다)

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방사성폐기물: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(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저장하고 있는 자

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방사성폐기물: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의 소재지

제1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방사성폐기물

가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

1) 경수로: 다발당 540만원

2) 중수로: 다발당 22만원

나.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: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. 다만,

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2조(과세대상) ① (생 략)	제142조(과세대상) ① (현행과 같
	<u>⇔</u>)
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	2
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	
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	2
다음 각 목의 것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방사성폐기물로서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
	<u>장에서 "방사성폐기물"이</u>
	<u>라 한다)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	제143조(납세의무자)
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	2
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	
자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방사성폐기물: 방사성폐
	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

3. (생략)

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 전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부과한다.

- 1. (생략)
- 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다음 각 목의 납세지가. ~ 다. (생 략)<신 설>

3. (생략)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 ^전략)

-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(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
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
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
다)에 저장하고 있는 자
3. (현행과 같음)
제144조(납세지)
1. (현행과 같음)
2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방사성폐기물: 방사성폐
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
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
3. (현행과 같음)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
행과 같음)
2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방사성폐기물
가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
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

료

1) 경수로: 다발당 540만원 2) 중수로: 다발당 22만원 나.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: 2 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 만원. 다만,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 당 2천원으로 한다. ③ ~ ⑤ (생 략)